

충청북도항결핵체보급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3. 3. 6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제안이유

'91. 10. 10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문변경

주요골자

징수대상 적용규정 변경

(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→ 동법 동시행규칙 제5조)

칙 부

1. 충청북도 항결핵체보급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
2. 신규조문대비표 1부

충청북도항결핵체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항결핵체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”을 “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5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 표

현	개
<p>제2조(징수대상) 수수료의 징수 대상은 생활보호법 제3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<u>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의</u>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결핵환자로서 보건소에 등록된자중 보건소장이 치료대상자로 선정한 일반환자로 한다.</p>	<p>제2조(징수대상)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5조</u></p> <p>의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